

#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25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하남시장

## 1. 제안이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관련 교육 내용 등을 개정하고,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개정 내용과 지역 실정에 맞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 목적 관련 위임 범위 수정(안 제1조)
- 나. 조례에 대한 용어 정의 조문 신설(안 제1조의2)
- 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준용 규정(안 제7조제3항)
- 라.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이용대상자 구분(안 제9조)
- 마.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 수단 등록 제출서류 규정 개정(안 제10조, 별표 1)
- 바. 특별교통수단과 대체 수단 운행지역 구분(안 제16조)
- 사.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조례 위임사항 규정(안 제19조, 별표 2)
- 아.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개정(별지 제1호서식)

## 3. 개정조례안: 덧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덧붙임

##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가. 예고 기간: 2025. 10. 14.~2025. 11. 4.(21일간)

나. 의견 내용: 의견 없음

**8. 부서협의 결과**

가. 성별영향 분석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

나.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경기도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과**

##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등” 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대체 수단” 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

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

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임산부. 이 경우 출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로 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다음 각 호” 를 “별표 1”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을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운영한다” 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 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을 “(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각각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제16조의 제목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의3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 을 “특별교통수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 ② 대체 수단의 운행지역은 관내를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각각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특별교통수단의등” 을 “특별교통수단 등의” 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중 “특별교통수단등” 을 각각 “특별교통수단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위탁을 철회” 를 “위탁계약을 해지” 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교육 대상자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 방법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교육 대상자 또는 그 소속 사업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자료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교통정책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 성명	교통정책과장 이 학 준
	팀장 직위 · 성명	교통정책팀장 신 건 상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한 연 철 (031-790-5095)

[별표 1]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제출서류(제10조 관련)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	중증보행장애인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경증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포함)		
	공통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li> <li>·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li> <li>·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제약 사유·기간, 휠체어 이용,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 어렵다는 문구 필수) (* 1개월 내 발급 유효)</li> <li>※ 경증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안내문 추가 제출</li> </ul>		
대체 수단 이용등록 제출서류	장애인 (휠체어 미 이용자)		임산부		영유아
	공통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개인 정보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li> <li>· (필요시) 장애정도 심사 결과 추가 안내문 (* 3개월 내 발급 유효)</li> <li>· (필요시)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 발급 진단서 (* 1개월 내 발급 유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분증</li> <li>·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택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택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4대 대형병원 이용 시 : 진료 예약증 필수 (강동경희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서울아산병원, 중앙보훈병원)</li> </ul>			

[별표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교육 세부사항(제19조제1항 관련)

대상자	종류	내용	횟수 및 시간
교통사업자	이동편의 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li> <li>○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li> <li>○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ul>	1회, 4시간 이상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li> <li>○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li> <li>○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li> </ul>	연1회, 2시간 이상
	성폭력 예방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의 발전에 관한 사항</li> <li>○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성폭력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소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의 성에 대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li> </ul>	연1회, 1시간 이상
택시운수 종사자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li> <li>○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li> <li>○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li> <li>○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li> </ul>	연1회, 2시간 이상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회원가입 여부				가입	미가입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 유형( 장애)		장애정도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보행 장애(휠체어)				
		<input type="checkbox"/> 일시적 보행 장애(비 휠체어)				
		그 외 조례에서 정하는 자( <input type="checkbox"/> 임신부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일상 생활상태	독립	부분 도움	완전 도움	의사소통	가능
휠 체 어	전동	수동	없음	보 조 인	있음	없음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또는 날인

하남시장(하남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 신청서 작성 안내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2. 이용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구분		제출서류
특별교통수단	중증 보행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li> <li>●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 해당자: 장애인증명서</li> <li>- △ 해당자: 장애정도 심사 결과 통보서 또는 보행상 장애 판정을 증빙할 수 있는 공공기관 발급 서류</li> </ul> </li> </ul>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진단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내 보행상 장애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문구 명시</li> <li>※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 휠체어 이용 문구 포함</li> </ul> </li> <li>-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확한 숫자 명시</li> <li>-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li> </ul>
대체 수단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비 휠체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단서 내 대중교통 이용 불가 기간 명확한 숫자 명시</li> <li>-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용 가능</li> </ul>
	시군 조례로 정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외 시장이 이용 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신부 : 임신확인서 또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등</li> <li>-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li> </ul> </li> </ul>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전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1666-04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약 서

본인은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lt;신 설&gt;</u></p> <p>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이하 “<u>특별교통수단 등</u>”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1조(목적) -----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p> <p>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u>특별교통수단 등</u>”이란 「<u>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u>대체 수단</u>”이라 한다)을 말한다.</p> <p>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 ----- --- “<u>특별교통수단 등</u>” ----- ----- ----- -----.</p>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4.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및 요금

5. (생략)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

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②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7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①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16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

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사고·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부

<신 설>

3. (생 략)

4.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업무상 사유 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타 지역 거주자

<신 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임산부. 이 경우 출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로 한정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② -----

-----

- 특별교통수단 등-----

----- 별표 1-----

-----

-----.

<삭 제>

<삭 제>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  
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  
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  
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  
단서 또는 소견서

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  
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  
료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  
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  
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  
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⑤ ~ ⑧ (생략)

제13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등은 매일 24시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  
-----.

⑤ ~ ⑧ (현행과 같음)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

간 운영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대상자는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련된 통합운영 표준지침을 준용한다.

---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특별교통수단 등-----  
-----  
-----.

② 특별교통수단 등-----  
-----  
-----  
-----  
-----.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 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은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다.



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한다.

<삭 제>

④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등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등의 환승·연계 지원
7.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등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생략)
- ② ~ ⑤ (생략)

-----  
-----  
-----.

1. 특별교통수단 등-----  
-----  
-----
2. 특별교통수단 등-----  
-----
3. 특별교통수단 등-----  
-----
4. 특별교통수단 등-----  
-----  
---
5. 특별교통수단 등의 -----  
-----  
---
6. 특별교통수단 등-----  
---
7. -----  
특별교통수단 등 -----  
-----
8. 특별교통수단 등-----  
-----  
---
9. (현행과 같음)
- ② ~ ⑤ (현행과 같음)



3. 교통약자서비스

4.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을 의뢰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교육대상자 또는 그 소속 사업자는 시장이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자료 관리를 위해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 2025. 2. 17.] [법률 제19674호, 2023. 8. 1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2020. 12. 22., 2022. 1. 18., 2023. 9. 14.>

1.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1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교통사업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6.>

1.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2. 성폭력 예방교육

③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택시운수종사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1. 1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보존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실시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의 방법, 내용 및 경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16.>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교통수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18.>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 등으로 하며,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5. 16.>

⑨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⑫ 특별교통수단과 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 및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2023. 5. 16.>

**제16조의2(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이동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2022. 1. 18.>

[본조신설 2018. 6. 12.]

##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 2025. 7. 17.] [대통령령 제35208호, 2025. 1. 14., 일부개정]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 가.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 1)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
    - 2)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 가) 해당 시·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군
      - 나)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군
      - 다) 해당 시·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 라) 해당 시·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가 없는 시·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  
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23. 5. 30.]

[제목개정 2023. 11.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4. 1. 16.>]

###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8.] [국토교통부령 제1517호, 2025. 8. 8., 일부개정]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 7. 20.>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3. 7. 20.>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2024. 12. 26.>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는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 4

####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5. 1. 1.] [경기도조례 제8254호, 2024. 12. 31., 일부개정]

**제11조(운영 기준 마련)** ③ 도지사는 도 내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이용과 관련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광역·시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및 운행관련 기준(시간, 요금, 지역, 대상자 등)
3. 차량배차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
4. 이용자, 운수종사자, 상담원 준수사항
5.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시군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5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7. 28.] [국토교통부령 제1509호, 2025. 7. 28., 일부개정]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2. 11. 23., 2013. 11. 7., 2015. 7. 20., 2019. 10. 1., 2020. 12. 29., 2021. 1. 15., 2024. 12. 2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 6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 [2025. 8. 1. 3차 개정]

제12조(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규정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으로 [별표1]에 따른 이용자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이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발급)를 제출한 휠체어 이용자
3. 제1호에 따른 중증보행장애인 중 중복장애인 경우 주장애 또는 부장애 중 어느 하나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 장애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4. 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제15조(이용요금) ①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은 네비게이션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최적거리(유료도로 포함) 기준으로 운행하며, 이를 적용한 이용요금을 부과한다. 다만, 관내이동의 경우는 현지 상황에 따라 무표도로의 최적거리로 운행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전용차량 이용요금의 기본구간은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10km초과 시 5km당 100원으로 정한다.

③ 이용요금 외에 발생하는 통행료는 시·군 운영비에서 부담하고, 주차료는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